

수 의 사 법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

2020. 9.

농 립 축 산 식 품 부
(방역정책과)

1. 개정이유

동물원 및 수족관에 상시 고용된 수의사가 처방전을 발급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의사법이 개정(법률 제17274호, 2020.5.19. 공포, 2020. 11.20. 시행)됨에 따라 동물원 및 수족관 상시고용 수의사의 처방전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동물원·수족관 상시 고용 수의사의 처방전 발급에 필요한 사항 마련
(안 제12조 개정)

- 상시고용 수의사의 범위, 신고방법, 처방전 발급 및 보존 방법, 진료부 작성 및 보고, 교육, 준수사항 등 모범 위임사항 마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0. 9. 18.~ 10. 28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 제목 “(축산농장 상시고용 수의사의 신고 등)”을 “(상시고용 수의사의 신고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같다”를 “같다), 동물원 또는 수족관(이하 이 조에서 “축산농장등”이라 한다)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후단 중 “축산농장”을 “축산농장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축산농장이”를 “축산농장등이”로, “축산농장의”를 “축산농장등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축산농장”을 “축산농장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 중 “축산농장”을 “축산농장등의”로, “농장주”를 “농장주 또는 운영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축산농장 상시고용 수의사 의 신고 등) ① 법 제12조제5항 전단에 따라 축산농장(「동물보 호법 시행령」 제4조에 따른 동 물실험시행기관을 포함한다. 이 하 <u>같다</u>)에 상시고용된 수의사 로 신고(이하 “상시고용 신고 “라 한다)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고서에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 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 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(이하 “시·도지사“라 한다)나 시장·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제12조(상시고용 수의사의 신고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 <u>같다</u>), 동물원 또는 수족관 (이하 이 조에서 “ <u>축산농장등</u> ” <u>이라 한다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체결 한 근로계약서 사본, 「소득세 법」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 수영수증, 「국민연금법」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서류. 해당 <u>축산농장</u> 에서 1년 이상 일하고 있거나 일할 것	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. ---- <u>축산농장등</u> ----- -----

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
어야 한다.

2. (생 략)

② 수의사가 상시고용된 축산농
장이 두 곳 이상인 경우에는 그
중 한 곳에 대해서만 상시고용
신고를 할 수 있으며, 신고를 한
하나의 축산농장의 동물에 대해
서만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.

③ 법 제12조제5항 후단에 따른
상시고용된 수의사의 범위는 축
산농장에 1년 이상 상시고용되
어 일하는 수의사로서 1개월 당
60시간 이상 해당 업무에 종사
하는 사람으로 한다.

④ ~ ⑥ (생 략)

⑦ 신고 수의사는 처방대상 동
물용 의약품의 구입 명세를 작
성하여 그 구입일부터 3년간 보
관하여야 하며, 처방대상 동물
용 의약품이 해당 축산농장 밖
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
하고 농장주를 지도하여야 한
다.

-----.

2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축산농
장등이 -----

----- 축산농장등의 -----
-----.

③ -----
----- 축
산농장등-----

-----.

④ ~ ⑥ (현행과 같음)

⑦ -----

----- 축산농장등의

--- 농장주 또는 운영자-----
--.

상시고용 수의사 신고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즉시	
[] 축산농장 [] 동물실험 시행기관 [] 동물원 [] 수족관	명칭 전화번호/팩스번호 사업장 주소	대표자 성명 개설 연월일		
상시고용 수의사	성명	한글	수의사 면허번호	비고
		한자		
	집 주소			
	전화번호/휴대폰	이메일 주소		
	기존 신고 여부 및 그 신고일 [] 있음 [] 없음 종전 신고일 ()			

「수의사법」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축산농장(동물실험시행기관),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상시고용되었음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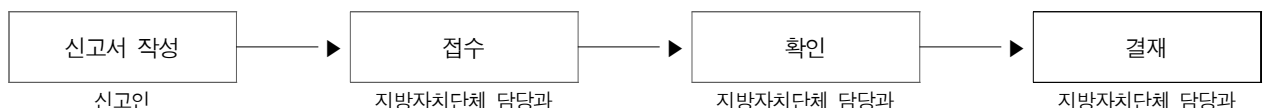
(서명 또는 인)
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
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
시장·군수·구청장

귀하

첨부서류	1. 축산농장, 동물실험시행기관,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1년 이상 일하고 있거나 일할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. 수의사 면허증 사본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

처리 절차

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2523